

노인학대신고 | 1577-1389

노인학대!

바로알기 신고의무자
교육교재



노인보호전문기관 홍보대사
이연경, 최재원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여러분의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합니다.
당신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61조의2).



이에 신고의무자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39조의6 제4항).

CONTENTS

노인학대,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3
내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4
왜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	5
먼저 노인학대를 알아봅시다!	7
노인학대, 처벌규정이 있나요?	16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7
학대피해노인 보호절차는?	18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	19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20



노인학대,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 골절상으로 진료를 받으려온 할머니의 몸에는 상처가 가득하다. 할머니는 웅크린 채 아무 말이 없고 며느리는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누군가 때리거나 꼬집은 상처로 보인다.



▣ 한겨울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는 악취가 나는 차가운 방안에 여름이불을 덮고 있다. 수급비는 알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상한 음식만 보이고 돌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한 당신은, 바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신고 안하면 **양심의 가책? + 과태료 3백만원~**

고민하는 당신을 돕기 위한 해결책이 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모든 직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관련 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모든 직원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의 모든 직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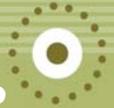
정말 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 그렇습니다.

법으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위 조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왜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인권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능력, 즉 “인권감수성”

- 인권이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입니다.
 - 사회적 약자는 권리 침해와 박탈의 경우가 많으므로 ‘약자를 위한 인권이 지켜지고 권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 특히 학대피해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취약한 인권 사각지대에 있기에 이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 인권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존중’을 요구
 - 나의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 사회구조적으로 상대적 약자(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나의 인권도 보장될 것입니다.
 -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을 도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은 곧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노인 인권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노인학대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당신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1577-1389** 로 신고해주세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노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 기 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태적 분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대표적 행위

- 꼬집고 때리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밀어서 넘어뜨린다.
- 제한된 공간에 감금하거나 거주지출입을 통제한다.
- 침대 등에 묶거나 신체를 구속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 및 물품(밥통, 냉장고), 식사, 음료 등으로부터 단절시킨다.
-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인다.
- 원치 않는 일(노동)을 강요한다.



예측 징후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 이상한 체중감소
- 바깥출입이 거의 없거나 집 주변에서 배회함
- 묶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대표적 행위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한다.
- 친구,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며 사회활동, 종교 활동, 이성교제 등을 방해한다.
- '죽이겠다', '시설로 보낸다',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모욕적인 말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예측 징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잠을 못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나 꺼림
- 다툼, 욕설, 큰소리가 자주 들림



성적 확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대표적 행위

-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강요 또는 시도한다.
-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일부를 만진다.
- 신체를 빚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또는 목욕을 시킨다.

예측 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대표적 행위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신용을 도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 대리권을 악용한다.
-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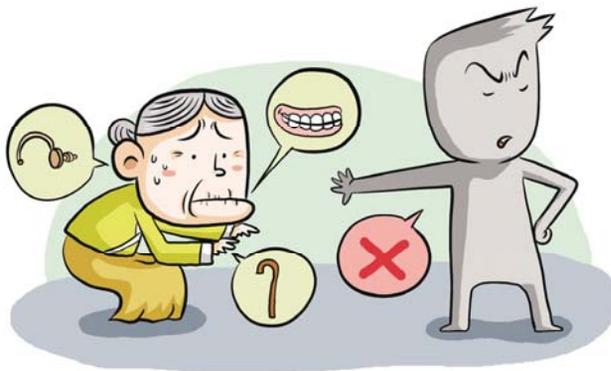
예측 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 노인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노인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대표적 행위

- 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는다(컨테이너 거주 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 자기방임

- 노인이 의료적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이 돌봄을 거부하여 생명이 위협받는다.
- 알코올 남용 및 자살시도

예측 징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
- 노인 주변 환경 건강이나 안전의 위험 증후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거환경
-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 기본적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

◎ 자기방임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 생명에 위협이 될 의식주 거부를 노인 스스로 함
- 자살을 시도함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대표적 행위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예측 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쉬어가는 시간, Q&A

다음 행위는 노인학대 유형 중 무엇일까요?

1. 노인의 허락 없이 신용을 도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
2.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한다. ()
3.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
4.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
5.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한다. ()
6. 노인이 의료적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
7.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정답

1. 경제적 학대 2. 신체적 학대 3. 방임 4. 정서적 학대 5. 성적 학대 6. 자기방임 7. 유기



노인학대, 처벌규정이 있나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노인학대 신고방법은?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 1577-1389로 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신고할 때는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및 주요정보에 대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신고자 비밀보장은 되나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노인복지법 제57조』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또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 보호절차는?



신고

1577-1389 또는 129로
전화 (24시간 상담)



접수

학대 관련 피해노인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파악



현장방문조사

학대피해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



학대사례판정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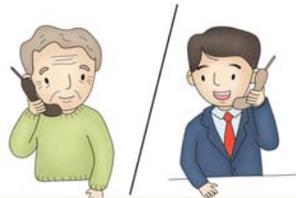
서비스 제공

상담, 법률, 의료,
쉼터입소 등



평가 및 종결

학대피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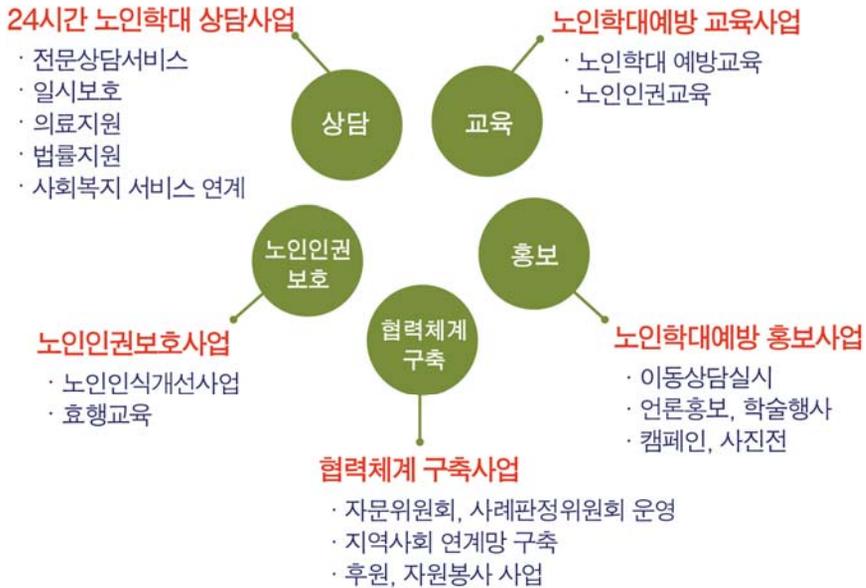
사후관리

종결 이후 지속적 관심으로
노인학대 재발 방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업무 실시
- 사업내용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응급상황의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노인복지법 제39조의7)
- 사업내용
 - 학대피해노인 긴급 보호 및 의식주 제공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대 재발 방지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해 학대행위자 등 가족상담서비스 제공
 -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진행



신고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자는 학대피해노인 스스로 학대신고가 어려울 때 노인돌봄 직무의 책임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의료인이라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병·의원에서 치료받을 때 의사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는 노인의 학대 증후 및 행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면?

- ① 학대 또는 방임으로 인한 손상과 후유증의 진단 및 치료로 더 이상 심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 ②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또는 증언 진술을 위해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시행하며 증거물 및 기록을 남깁니다.

- 노인의 건강진단의 기준, 상처의 형태, 수, 크기, 치료정도, 원인
- 관찰된 행동과 심리적 상태
- 상처가 발생한 장소 및 원인
- 노인 및 보호자의 상처 발생에 대한 설명과 적절성 판단
- 임상결과와 사진 및 검사도구를 통한 결과지
- 진술된 내용의 녹음 및 녹취

- ③ 노인학대로 의심되면 반드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 ①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합니다.
- ② 필요한 경우, 학대사례에 대한 증거자료 제공 및 증언 등 노인학대 문제해결에 협조합니다.



공무원이라면?

관할지역 대상자 중 학대피해노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대사례를 발견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하고 사례 관련 정보제공과 문제해결에 적극 협조합니다.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면?

- ①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 1389)에 의뢰합니다.
-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또는 보호자 신분조회 요청에 적극 협조합니다.
- ③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의 보호 및 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노인학대 경험 및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조치를 의뢰하면 필요한 조치를 지원합니다.
- ② 관할지역내 노인보호시설에서 노인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지원하고 협조합니다.
- ③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합니다.
- ④ 노인학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노인학대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종사자라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외에도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면?

- ①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 1389)에 의뢰합니다.
- ②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 ③ 노인학대의 가능성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 ①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합니다.
- ② 노인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 ③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119구급대원이라면?

119구급대원은 2011년 노인복지법 개정예 따라 신규 지정된 신고의무자로서 지역에서 보호받지 못한 학대피해노인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속히 의뢰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면?

- ①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위급상황 조치 후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의뢰합니다.
- ② 응급조치를 요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이송 조치합니다.
- ③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노인학대예방을 위해서?

- ① 정기적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에 참여합니다.
- ②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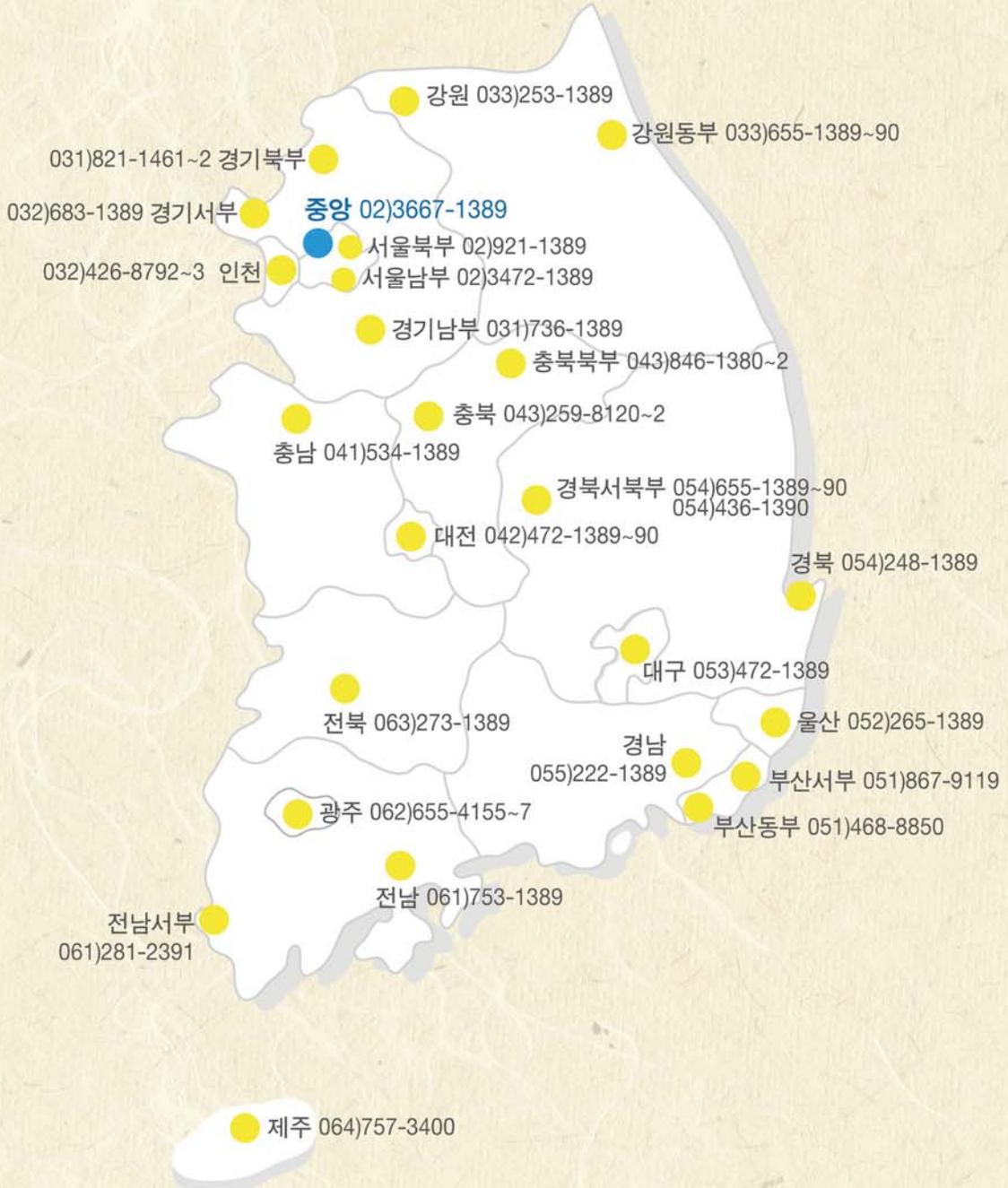


신고의무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25개소)

전국 공통번호 **1577-1389** (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킴이가 되어 주세요.

노인복지법 근거조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부터 12(비밀누설의 금지)